

서면질의 응답서¹⁾

- ※ 가입 펀드가 수개인 경우 각 펀드 모두에 대해 작성해 주실 것.
- ※ 질문에 대해 모르거나 답변할 것이 없으면 빈 칸으로 두시고, 반대로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종이에 기재해 주실 것.
- ※ 기재출서류는 ‘기제출하였음’이라고 기재해 주실 것.

1. 진술인의 성명과 나이 그리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명:

생년월일 및 나이:

직업:

2. 진술인이 가입(투자, 이하 ‘가입’)한 상품의 상품명은 무엇이며, 가입시점은 언제인가요?

3. 진술인 본인의 명의로 위 2.항의 상품(이하 ‘본 펀드’)에 가입하였는가요? (예, 아니오로 대답)

4.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진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본 펀드에 가입하였다면, 계좌명의자는 누구이고 진술인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계좌명의자(원고) 성명:

진술인과의 관계:

5. 펀드 가입 당시 가입명의자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 ② 초고령자(만 80세 이상), ③ 은퇴자, ④ 주부, ⑤ 장애인 중 하나였나요?

1) 본 서면질의 응답서는 재판부에 증거로서 제출될 수도 있는 자료이므로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술인 (또는 계좌명의자, 이하 ‘진술인’)의 본 펀드 투자내역은 어떠한가요?
 가입(투자)금액:
 판매회사 및 지점명:
 판매직원명 및 직위 내지 직책:
7. (1) 펀드 신청 및 투자확인서, (2)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3) 취약 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판매회사에 요청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
8. 진술인은 본 펀드 가입 시 (1) 펀드 신청 및 투자확인서, (2)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3) 취약 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 등에 직접 체크, 작성 및 서명·날인하였나요? 아니면 판매직원이 대신 체크, 작성하였나요? 아니면 이러한 서류는 본 적도 없나요?
- 9.1) 펀드 신청 및 투자확인서, (2)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3) 취약 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 등에 기재 내용 중 진술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0. 진술인은 본 펀드 가입 이전에 주식투자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등은 제외)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역(투자나 가입일자, 금액, 거래금융기관, 상품종류, 상품명 등)을 기재해 주세요.

11. 펀드 가입 당시 진술인은 어떤 경위로 본 펀드를 알게 되었나요?

12. 펀드 가입 당시 진술인은 본 펀드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들었나요?

13. 설명 내용 중에 진술인이 본 펀드에 가입한 이유가 되었던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14. 펀드 가입 당시 판매직원이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나 손실 또는 이익실현에 대해 사용한 단정적인 표현이 있나요? 당시 판매직원이 사용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15. 금융기관 직원과의 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 등 당시 설명 들었던 내용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참고로 금융기관 회사전화통화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이 녹음 및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화통화사실이 있다면 녹음파일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6. 혹시 펀드 가입 당시 진술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매직원이 진술인의 자택 또는 회사에 방문 내지 전화를 하여 진술인에게 본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나요?

17. 혹시 펀드 가입 당시 진술인이 펀드가입을 거부하였는데, 그럼에도 판매직원이 진술인에게 계속하여 본 펀드 가입을 재권유하였나요?
18. 펀드 가입 당시 진술인은 본 펀드를 어떠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였나요? (예를 들어 원금보장상품, 저위험상품, 중간위험상품, 고위험상품 등) 그와 같이 인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 본 라임펀드 자금은 본래부터 투자처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별도 모펀드에 재간접투자되는 상품인데, 진술인은 가입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들었나요?
20. 가입당시 진술인은 본 라임펀드 자금의 투자대상이 무엇으로 인식하였나요? 그와 같이 인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1. 진술인은 '이 사건 펀드자금은 LTV 50% 수준의 담보금융에 투자·운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22. 진술인은 ‘이 사건 펀드는 연 8%이상의 확정수익률이 보장되고, 펀드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23. 펀드의 특성, 구조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진술인이 전혀 다르게 인식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진술인이 인식한 내용은 무엇이고 진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4. 가입 당시 진술인은 본 펀드의 과거 수익률, 운용성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나요? 그와 같이 인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5. 가입 당시 진술인은 본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TRS 거래에 대해 설명 들은 바가 있나요? 만약 설명 들은 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나요?

26. 본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대상 등에 부실, 환매중단 등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라임자산운용에 환매중단 통보를 하였는데, 진술인은 가입 당시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을 들었나요?

27.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28. 펀드 가입 시 판매회사로부터 상품설명자료(상품제안서, 상품안내문, 상품전단지, 상품요약자료 등 명칭 불문), 신탁약관(신탁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그 자료는 무엇인가요?
29. 펀드 가입 이후 판매회사로부터 운용보고자료(운용보고서, 운용보고이메일, 운용보고문자 등 명칭 불문), 신탁재산 명세부 등을 제공받은바 있나요?
30. 위 상품설명자료(상품제안서, 상품안내문, 상품전단지, 상품요약자료 등 명칭 불문), 신탁약관(신탁계약서), 운용보고자료(운용보고서, 운용보고이메일, 운용보고문자 등 명칭 불문), 신탁재산 명세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판매회사에 요청해서라도 제출하여 주실 것).
31. 진술인에게 본 펀드에 가입한 돈은 어떠한 자금인가요? (예를 들어, 노후준비자금, 결혼준비자금, 전세보증금 사용예정자금, 여유자금 등)
32. 혹시 진술인은 본 펀드에 가입한 돈을 예·적금 등 원금보장 금융상품에 가입할

목적 내지 계획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진술인이 위 돈을 본 펀드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진술인은 펀드 가입 후 판매회사로부터 해피콜(투자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전화)을 받은바 있나요?

34. 진술인은 위에서 쓴 내용들 이외에 본 펀드에 있어 판매회사가 잘못 내지 거짓 설명하였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35. 진술인은 본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조정)신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바 있나요? 있다면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제출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또는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36. 진술인은 본 펀드 관련 대신증권과 자율조정 동의를 한바 있나요? 대신증권이 송부한 (1) 라임펀드 배상비율 산정위원회 결과 안내, 대신증권과 작성한 (2) 합의서, (3) 근질권설정계약서, (4) 배상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35. 기타 덧붙여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022.

위 진술인----- (날인 또는 서명)